

제183회 영등포구의회
2014년도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
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4. 9. 25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』 檢 討 報 告

1. 경 과

의안 제10호로 2014년 9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무단투기로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 불편
사항을 초래하고 있어 무단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
방안으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하여
주민들에게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특별회계 설치, 존속기한에 관하여 명시
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특별회계 사업의 범위 및 관리·운영(안 제3조, 안 제4조)

다.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(안 제5조, 안 제6조)

라. 특별회계의 일시차입 및 잉여금의 처리(안 제7조, 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무단투기에 따른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○ 주요내용을 보면

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과, 사업의 범위, 세입 및 세출사항, 일시차입 및 잉여금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.

-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및 담배꽂초 등 무단투기로 인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도시청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.

서울시에서는 무단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회계에 편입되었던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“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”를 설치하도록 각 자치구에 요청하였음.(서울시 생활환경과-7734, 2014. 5. 28)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,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·세출로서 일반 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,

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동법 제9조제3항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규정에 근거하여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제정되어 있는 등 본 조례의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- 그러나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·출입은 자치단체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, 수년간에 걸쳐 특정 특별회계로 계속적으로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입방안,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, 시행시기의 적정성 여부 등의 검토와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임.

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회계로서,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관 련 법 령

■ 『지방재정법』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5.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5.28.> [전문개정 2011.8.4.]